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남방·북방국가 통계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자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대면 전자조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국제보건분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민이전계정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개선 추진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신규 통계 생산 업무 반영을 위하여 소득통계과 및 사회통계기획과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3. 행정자료 서식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통계 전반의 개선·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제3조제1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통계 전반의 개선·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5. 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분석자료의 작성

6. 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

제15조제1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3”을 “145”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5”를 “199”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0”을 “161”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43”을 “145”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95”를 “199”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0”을 “161”로 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 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④ (생략) ⑤ <u>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 2. <u>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 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u> 3. <u>행정자료 서식의 표준화 등 행정자료 활용 기반 구축</u> 4. <u>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⑥ ~ ⑬ (생략)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통계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에 관한 기획 및 추진</u> 2. <u>통계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 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u> 3. <u>행정자료 서식 표준화 등 행 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u> 4. <u>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 5. <u>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④ (생략) ⑤ <u>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u>경제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 5. (생략) ⑥ ~ ⑩ (생략)	제3조(경제통계국)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1. <u>경제통계 전반의 개선 · 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u> 2.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⑫ (생략) 제4조(사회통계국) ① · ② (생략)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사회통계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사회동향 및 사회지표 분석</u> 3. · 4. (생략) 5. <u>고령자·여성 및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u> 5의2. (생략) 5의3. · 5의4. 삭제 <u><신설></u> 6. (생략) ④ ~ ⑨ (생략) 제15조(한시정원) 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⑪ ----- -----. 1. · 2. (현행과 같음) 3. <u>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⑫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통계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사회통계 전반의 개선·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u> <u><삭제></u> 3. · 4. (현행과 같음) 5. <u>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분석자료의 작성</u> 5의2. (현행과 같음) 6. <u>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① ----- -----
--	---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u> <u>일까지</u>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 을 통계청에 두며, 별표 9의 정 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 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생략)	----- ----- ----- <u>2023년 2월 28</u> <u>일</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143</u>	<u>145</u>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195</u>	<u>199</u>	+4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160</u>	<u>161</u>	+1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 · <u>143</u>	· · <u>145</u>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u>195</u>	<u>199</u>	+4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160</u>	<u>161</u>	+1
· ·	· ·	· ·	